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7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김소희・김선교・김성원

성일종 • 최수진 • 주호영

김대식 · 김예지 · 우재준

엄태영 · 이만희 · 김상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,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 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.

한편,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8-90년 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.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,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 획

제12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 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7조(기본계획의 내용) ① 기본	제7조(기본계획의 내용) ①			
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				
포함되어야 한다.			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<u>14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</u>			
	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			
	<u>저감계획</u>			
14.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	15.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			
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	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사항	으로 정하는 사항	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	
제12조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 ①	제12조(특별정비계획의 수립) ①			
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				
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	
1. ~ 18. (생 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1 <u>9. 건축물의 해체·건설 및 유</u>			
	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			
	<u> 저감계획</u>			
19.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	<u>20.</u>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			
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	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			
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		
하는 사항	하는 사항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